

第 22 回 達西區議會(定期會)

議會本會議會議錄(附錄)

第 2 號

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

目 次

1. 大邱直轄市達西區公有財產賣却特例에關한條例廢止條例(案)審查報告書	9 面
2. 大邱直轄市達西區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(案)審查報告書	11 面
3. 94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(案)審查報告書	18 面
가. 內務委員會	
4. 大邱直轄市達西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(案)審查報告書	24 面
5. 大邱直轄市達西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(案)審查報告書	26 面
가. 社會都市委員會	
6. 1994年度區政業務計劃	31 面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 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12. 1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11. 26
- 다. 회부일자 : 93. 11. 30
- 라. 상정일자 : 93. 11. 30

2. 제안설명 요지

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제정된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

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공제 (20%)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각기한이 지났으므로 폐지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제안설명 요지와 같이 동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좋다고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.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반대없음.

7. 첨부 : 폐지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(88. 5. 1 조례 제47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